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185
------	------

2021. 3. 2.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5일, 정진술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1.3.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정진술 의원)

2. 제안이유

- 자치법규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말의 올바른 쓰임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일부 조례에 남아있는 어렵고 어색한 일본어식 한자어의 표현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 쓰이는 대표적 일본어식 한자어의 표현인 “가필”, “감안” “개호” 등의 일본어식 한자어 총 50개에 대하여 각각 “고쳐씀”, “고려”, “간병” 등의 표현으로 순화함.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에 남아있는 “감안”, “노임” 등 6개의 일본식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시민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개정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조례안의 일괄정비 사항

-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은 일본식 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령 속 일본식 용어 361개를 찾아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일괄정비가 필요한 용어 50개를 최종 선정하였음.¹⁾

<법제처 일괄정비 대상 일본어식 용어 50개>

용어	정비어	용어	정비어	용어	정비어
가필	고쳐씀	마대	포대	흑판	칠판
감안	고려	명기	명확하게적다	저리	저금리
개호	간병	명찰	이름표	전도	선지급
계출	신고	모타	모터	절취	자름
고리	고금리	바란스	밸런스	절취선	자르는선
고아원	보육원	분비선	분비샘	제전	축제

1) 법제처 국무회의 보고자료(2020.10.06.), ‘일본식 용어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용어	정비어	용어	정비어	용어	정비어
공란	빈칸	빙점	어는점	지불	지급
관능	감각활용검사	센타	센터	청부	도급
구근	알뿌리	스라브	슬래브	추월	앞지르기
구리스	그리스	어분	생선가루	타이루	타일
굴삭기	굴착기	어획고	어획액	터키탕	증기탕
기아	기어	연돌	굴뚝	통달	도달
납득	수금	음용수	먹는 물	하청	하도급
노임	임금	이서	서명	한천	우무
대합실	맞이방	입회	참관	후·선불	후·선지급
두개골	머리뼈	잔고	잔액	휴즈	퓨즈
쇼바	완충장치	잔교	구름다리		

- 조례안은 우리 조례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 중 “감안”, “노임”, “명기”, “입회”, “지불”, “하청” 6개의 용어를 각각 “고려”, “임금”, “명확하게 적다”, “참관”, “지급 또는 납부”, “하도급” 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 738건(조례안 발의일자 기준) 중 21건을 대상으로 44건의 조문을 정비하게 되었음 [참고자료].
-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쓰고 대물림 해 온 일본식 한자어²⁾와 일본식 용어의 조례 사용은 자치법규를 어렵게 하거나 어색하게 하여 시민의 자치법규 편의성과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됨.
- 이에 올바른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꿔 사용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자치법규를 쉽고 정확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음.

2) 일본식 한자어는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현한 것을 말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자료] 정비대상 조례와 조문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1조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5호	감안-> 고려
제2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3호	
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6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4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1조제2항	노임-> 임금
제5조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	제4조제2항	
제6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	명기-> 명확하게 적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5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5호	감안-> 고려
제8조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2조제2항 후단	
제9조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명기->명확하게 적다
		제11조제2항	
제10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입회->참관
		제5조	
		제10조제6항	
		제11조제8항	
제11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옹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지불->지급
제12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8조의4제6항	
제13조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20조	노임->임금
제14조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의2제1항	지불->지급
제15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18조제3항	
제15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제5호라목	
제16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지불->납부
		제12조제2항	감안->고려
		제13조제2항	
제17조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마목	지불->지급
제18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감안-> 고려
		제7조제1항제12호	지불-> 납부
제19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11조제1항	지불-> 납부
제20조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제8조제7호	하청-> 하도급
제2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5조제1항제1호	감안-> 고려
		제69조제2호	노임-> 임금
		제73조제2항	입회-> 참관
		제83조의 제목	
		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정진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85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1명)
찬 성 자 : 고병국, 권영희, 김화숙,
문병훈, 박순규, 이세열,
이승미, 이은주, 임종국,
전병주, 최 선 의원(11
명)

1. 제안이유

- 자치법규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말의 올바른 쓰임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일부 조례에 남아있는 어렵고 어색한 일본어식 한자어의 표현을 일괄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또는 통용되는 한자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쓰이는 대표적 일본식 한자어의 표현인 “가필”, “감안”, “개호” 등의 ‘일본어 한자어 총 50개의 대하여 각각 “고쳐씀”, “고려”, “간병” 등의 표현으로 순화함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단서 중 “감안”을 각각 “고려”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차

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노임”을 “임금”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5항 본문 중 “명기하도록”을 각각 “명확하게 적도록”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명기하여”를 “명확하게 적어”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기하는”을 각각 “명확하게 적는”으로 하고, 제3조제5항 단서 중 “명기할”을 “명확하게 적을”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중 “명기”를 “명확하게 적을 것”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후단 중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적어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명기한다”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0조제6항 및 제11조제8항 중 “입회”를 각각 “참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입회를”을 “참관을”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입회를”을 “참관을”로,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6항 중 “지불”을 각각 “지급”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노임”을 “임금”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지불”을 각각 “납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중 “감안”을 각각 “고려”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7조제1항제12호 중 “지불”을 각각 “납부”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불”을 각각 “납부”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하청”을 “하도급”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69조제2호 중 “노임”을 “임금”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제83조제1항 중 “입회”를 각각 “참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입회자”를 “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회자
가”를 “참관인이”로 한다.

제83조의 제목“(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를“(물품검사 또
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